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465호 2018. 12. 5. (수)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8-1195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, 연구시설) 결정(변경)
(안)공람·공고.....3
- 정선군 공고 제2018-1227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.....8
- 정선군 공고 제2018-1233호 제7기(2019~2022년)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공고.....9
- 정선군 공고 제2018-1235호 고한읍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.....13
- 정선군 공고 제2018-1238호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·18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8-1195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, 연구시설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, 연구시설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1월 26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: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, 연구시설) 결정(변경)(안) 주민의견 청취
2. 위 치:강원도 신동읍 조동리 260-4번지 일원
3.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, 연구시설) 결정(변경)(안) 조서: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4.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, 연구시설) 결정(변경)(안) 도: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5.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:정선군청 도시건축과, 신동읍사무소
6. 열람기간: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(2018. 11. 26 ~ 12. 11)
7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: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신동읍사무소에 서면 제출
8. 기타사항: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본 공람·공고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18-1227호

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년 12월 4일

정 선 군 수

1. 제정이유

- 지역축제·관광홍보·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지역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정지원(안 제2조)
 -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음
-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(안 제3조)
 -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제출하며, 군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재단에 통보하여야 함
- 출연금의 지급(안 제4조)
 - 재단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, 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결산서 제출(안 제5조)
 -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12.04. ~ 2018.12.26.

4. 제정조례안 : 「붙임」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

- 주 소 : (우)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
- 전 화 : 033-560-2216
- 팩 스 : 033-560-2592
- 이 메 일 : wnstn5763@korea.kr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정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 고
	찬 성	반 대		

[붙임]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정지원)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한국지역진흥재단(이 “재단” 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3조(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)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- 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- 3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출연금의 지급)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 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결산서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

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정선군 공고 제2018-1233호

제7기(2019~2022년)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 공고

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,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를 실시하오니,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2월 04일

정 선 군 수

1. 공 고 기 간 : 2018. 12. 04. ~ 2018. 12. 17. (14일간)

2. 의견제출 기간 : 2018. 12. 04. ~ 2018. 12. 17.

3. 의견제출처

- 주 소 : (26127)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보건행정팀
- 연락처 : 전화) 033-560-2152, FAX) 033-563-4000, E-mail) ams1213@korea.kr

4.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

- 지역사회 현황분석
-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
-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수립
- 중장기 추진과제 설정
-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

정선군 공고 제2018-1235호

고한읍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

정선군 고한읍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,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 합니다.

2018년 12월 4일

정 선 군 수

1. 취 지

- 시가지 교통 편의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경찰서와 협의 지정된 고한읍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3. 행정예고(공고) 방법 : 정선군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jeongseon.go.kr>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8. 12. 04. ~ 12. 24. (20일간)

5. 단속개시 : 2019. 3. 1.

- 고한읍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규지정하고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,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 완료 후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

6.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

고한5교 ~고한읍 핑크 스키보드앞, 고한시장 우회도로(영동철물앞 ~제오기 헤어센스앞)

위치도



무인단속 CCTV 설치지역



7. 의견제출

○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8. 12. 24. 까지 의견서를 정선군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FAX(033 - 560 - 2174)

나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정선군 도시건축과 교통지도팀(033-560-2512)

※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: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.

정선군 공고 제2018-1238호

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년 12월 5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아라리촌 유료 관광지 운영에 따른 이용 불편 초래
 - 아리랑센터(공연장, 박물관) 이용 관광객 아라리촌 출입 불편
 - 군민은 무료입장임에도 불편 초래(신분 확인절차 이행)
- 정선생활문화센터 개관 시 이용자 아라리촌 진출입 불가피
- 아라리촌 입장객 감소 및 유료 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과다소요

2. 주요내용

-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 개정
 - 아라리촌 무료 이용
 - 아라리촌 내 연계 프로그램 활용 명시(문화관광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(참조:문화관광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 :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라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주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(우 26131)
- 연락처 : 전화(033-560-2569), 팩스(033-560-2593), 이메일(k3735872@korea.kr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일부개정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속문화 체험시설인 정선군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정선군 아라리촌(이하 “아라리촌”이라 한다)은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에 둔다.

제3조(시설) 아라리촌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- 1. 전통가옥
- 2. 판매시설
- 3. 전시시설
- 4. 놀이마당
- 5. 기타 부대시설

제4조(입장) ① 아라리촌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.

② 아라리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.

- 1. 시설보수 또는 긴급점검이 필요한 날
- 2.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날
- 3.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날

③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입장의 제한)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- 1. 감염병 질환자
- 2. 유류, 흉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물품을 소지한 사람
- 3.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4.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6조(행위의 제한) 이용자는 아라리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민속자료 및 건축물,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

- 2. 토석, 수목 등을 굴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
- 3. 취사 및 과실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
- 4.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

제7조(손해배상) 아라리촌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.

제8조(연계 프로그램) ① 군수는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.
② 군수는 아라리촌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또는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,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리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·기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아라리촌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및 「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·책임)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- 1.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
- 2.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·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·변조
- 3. 담보제공이나 양도·전대(轉貸) 금지
- 4. 법령이나 조례 준수, 계약 및 군수의 지도·감독 사항 이행

제11조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아라리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권리양도의 제한) 제11조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정선군으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정선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